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및 대상 유해인자가 궁금합니다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Q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의 사업주입니다. 저희처럼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상시 노동자가 5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에 속하는가요? 대상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작업환경측정은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위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령은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가진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을 시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위탁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위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113종)	• 금속류(23종)
	• 산 및 알칼리류(17종)	•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 금속가공유
물리적인자	• 소음(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분진	• 광물성 분진	• 곡물 분진
	• 먼 분진	• 나무 분진
	• 용접 흄	• 유리섬유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1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 4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 5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1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작업환경측정 지원내용
산업안전보건공단>재정지원
>건강디딤돌>사업소개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8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